

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(안) 의견청취의 건

의안 번호	247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3. 11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출근거

- 「경관법」 제11조(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2. 제출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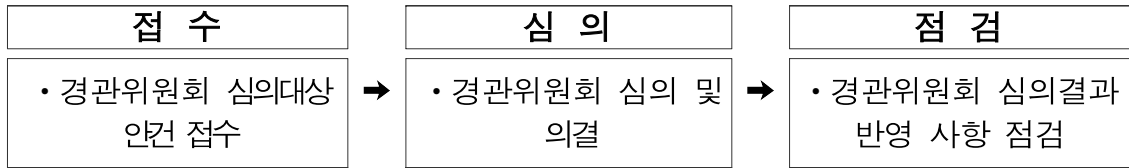
- 2017년 기 수립된 달성군 경관계획 수립 5년에 도래함에 따라 변화된 우리 군 실정을 반영한 장기적인 경관기준 마련 필요
- 우리 군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보존·관리를 위하여 수립중인 ‘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(안)’에 대하여 「경관법」 제11조에 의거 추진현황 보고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간적 범위 : 달성군 행정구역 전지역(428.3km²)
- 시간적 범위 : 기준년도 2024년·목표연도 2029년
- 내용적 범위
 -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
 - 경관계획의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경관계획의 구체적 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
 - 경관계획의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등

○ 경관위원회 심의

- 심의대상 : 사회기반 시설(도로·하천), 개발사업, 건축물, 경관개선사업 등
- 심의방법 :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심의 매달 실시



4.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

○ 추진상황

- 2023. 3. : 용역 착수
- 2023. 5. : 착수보고회 실시
- 2023. 6. ~ 2024. 1. : 현장조사 실시 및 지역 주민의견 청취
- 2024. 2. : 공청회 개최
- 2024. 3. : 군의회 의견청취

○ 향후계획

- 2024. 3. : 郡 경관위원회 검토 심의
- 2024. 3. : 市 경관위원회 승인 심의
- 2024. 4. : 행정예고
- 2024. 5. : 고시
- 2024. 6. : 달성군 경관 조례 개정

5. 근거법령

- 「경관법」 제11조(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- 「경관법」 제15조(경관계획의 정비)

□ 「경관법」 제7조, 제11조, 제15조

제7조(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경관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3.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(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)의 군수

제11조(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① 시·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시·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5조(경관계획의 정비)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
□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(안)

구분		심의대상	
사회기반 시설	도로	인도가 설치되며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사업	
	하천	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 시설사업	
개발사업	도시지역	대상지역 면적이 3만㎡ 이상인 개발사업	
	도시지역 외의 지역	대상지역 면적이 30만㎡ 이상인 개발사업	
	마을정비구역	대상지역 면적이 20만㎡ 이상인 생활환경정비사업	
건축물	중점경관관리구역	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 (공장, 창고 용도 등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 조성중인 곳은 제외)	
	공공건축물	연면적 660㎡ 이상의 신축하는 건축물(설계공모방식 건축물 제외)	
	공동주택	공동주택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(재도색 포함)	
	일반건축물	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,000㎡ 이상의 건축물	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건축물 (공장, 창고 용도 등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 조성중인 곳은 제외)
			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의 건축물
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경계선 또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·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m 이내의 구역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공작물 중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 건축물은 제외)			
기타사항	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		
	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		
	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		
	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		
	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		
	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		
	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		
	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마련사업		
	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진흥,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		
	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·관리·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	
제외대상	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		
	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		

□ 경관계획 재정비(안)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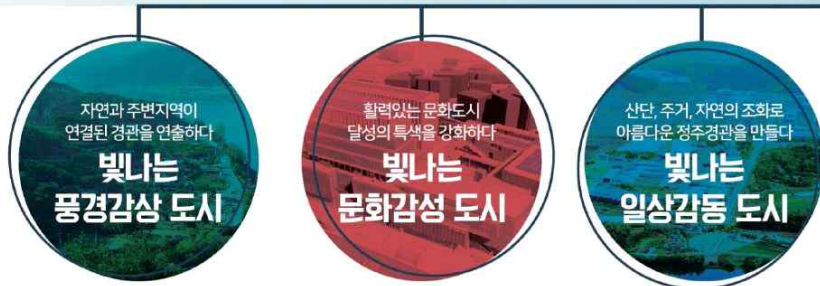
가. 경관 기본방향



나. 경관 미래상

문화·자연·관광·산업·행복정주 등 다양한 가치를 담아, 달성군민의 삶에 체감(感)가능한 변화를 비추다

LIFE PLUS [라이프 플러스]로, 빛나는 도시 달성



다. 경관목표 및 추진전략

빛나는 풍경감상 도시 자연과 주변 지역이 연결된 경관을 연출하다	전략1 풍경도시 산림농성 및 조망권 보전 1-1 산림, 구릉지 스카이라인 보전 1-2 산림 조망을 위한 통경축, 조망축 확보 1-3 도로에서 조망되는 산림 연결부 경관관리	전략2 그린도시 산림, 수변과 조화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2-1 기초성원도 도심 내 녹지 보전 2-2 가로변 녹지 확충으로 도심 녹시율 증진 2-3 친환경적 공간 조성으로 녹지 네트워크 구축	전략3 수변도시 자연친화적 친수경관 활성화 3-1 친수성 향상을 위한 보행자 중심 공간 조성 3-2 수변의 친환경성 극대화를 위한 주변경관 관리 3-3 볼거리가 많은 수변 특화경관 형성	
	빛나는 문화감성 도시 활력있는 문화도시 달성의 특색을 강화하다	전략1 역사도시 역사자원 연계로 경관 영향력 확산 1-1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변 지역 관리 1-2 자원 인지도 및 주목성 향상 1-3 방치된 취락 자원을 활용한 테마경관 조성	전략2 문화도시 달성군 주요 문화자원의 특색 강화 2-1 자원 주변에 방치된 경관 위해요소 통합개선 2-2 문화자원과 주변을 연계한 문화네트워크 구축 2-3 문화도시로 발전을 위한 신규 문화시설 확충	전략3 창작도시 방치된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특화경관 창출 3-1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창작마을 형성 3-2 신규자원과 주변을 연계한 테마경관 창출 3-3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참여형 공간 조성
	빛나는 일상감동 도시 신단, 주거, 자연이 아름다운 정주경관을 만들다	전략1 활력도시 주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개선 1-1 인공적 이미지 최소화를 위한 산업시설 관리 1-2 정돈되고 편안한 색채의 정주환경 연출 1-3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예술문화적 경관 형성	전략2 매력도시 생활 경관의 새로운 매력 창조 2-1 보행 친화적 신시가지, 구시가지 조성 2-2 인공적이고 혼재된 경관 요소 관리 2-3 모두 살기 좋은 정주경관 형성	전략3 소통도시 주민 간 소통을 유도하는 경관 제공 3-1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는 소통공간 조성 3-2 주거지 활력을 더하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 3-3 지속적 유지, 관리를 위한 경관협정 체결

□ 경관계획 재정비(안) 권역 계획

가. 경관권역 계획



나. 경관축 계획

